

참고3

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제재처분 기준

※ : 신설

(단위 : 만원)

대상	위반행위	재가맹 제한기간*	과태료·과징금 (1차/2차/3차 위반)
개별 가맹점 (상인)	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	6개월	과태료 (10/20/30)
	^(A)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	3년	과징금 (부당이득금의 3배 ↓)
	^(A)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	3년	과징금 (부당이득금의 3배 ↓)
	가맹점 밖에서 거래(비대면 결제 포함)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	6개월	과태료 (300/500/1,000)
	소비자에게 거래의 대가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	6개월	과태료 (50/100/200)
	^(B) 제3자(브로커 등)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·사용하는 경우	5년	과징금 (부당이득금의 3배 ↓)
	소비자가 온누리상품권 액면가의 60% 이상을 사용하였으나 현금으로 잔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	6개월	-
	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하는 경우	1년	-
	가맹점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	6개월	-
환전 대행 가맹점 (상인화)	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	1년	과태료 (500/1,000/2,000)
	(A)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대행을 대행하는 경우	3년	과태료 (1,000/1,500/2,000)
	개별가맹점이 가맹점 밖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	6개월	과태료 (300/500/1,000)
	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	1년	과태료 (500/1,000/2,000)
기타	개별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	-	과태료 (10/50/100/ 1,000/2,000)
	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	-	과태료 (1,000/1,500/2,000)
	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·사용하는 경우	-	벌금 (2,000 ↓)
	* (B)에 해당하는 공모자	-	
	위반행위 조사 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	-	과태료 (300)
	연락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등 위반행위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	-	과태료 (300 ↓)

*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 위반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되며 일정 기간 재가맹 제한